

집합투자기구 변경 대비표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HDC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효력발생일 : 2021.01.29.
3. 주요 정정사항 : 운용역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신탁계약서]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정정 전	정정 후
<p>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u>표시한다</u>.</p> <p>② <생략></p>	<p>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u>발행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u>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u>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u>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5.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u>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u>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u>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5.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u>.</p> <p>② 집합투자업자는 <u>한국예탁결제원과</u>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u>한국예탁결제원은</u>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u>한국예탁결제원에</u>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u>한국예탁결제원은</u>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u>한국예탁결제원은</u>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 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u>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u>전자등록기관과</u>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u>전자등록기관은</u>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u>전자등록기관에</u>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u>전자등록기관은</u>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u>전자등록기관은</u>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 ⑧ <현행과 같음></p>
<p>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으로</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 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판매수수료) ① ~ ③ <생략> ④ 판매회사는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 <u>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u>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40조(판매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판매회사는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 <u>수익증권저축약관</u>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④ <생략>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 <생략>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⑨ ~ ⑩ <생략>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u>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u>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u>수익증권저축약관</u> "(C-P2 수익증권, C-P2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 <u>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u>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u><신 설></u>	<u>부 칙</u> 이 투자신탁은 2021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 운용역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 <u>홍호덕</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u>박정훈</u>	책임운용전문인력 : <u>박정훈</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u>강병희</u>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운용전문인력변경	-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홍호덕→박정훈)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박정훈→강병희)
5.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 <u>홍호덕</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u>박정훈</u>	책임운용전문인력 : <u>박정훈</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u>강병희</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 투자대상 ⑦ 집합투자증권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⑦ 집합투자증권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삭 제>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u>평가일 현재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u>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u>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u>

		<p>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p> <p>①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 시가</u></p> <p>② 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u>가격</u>.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p> <p>⑥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u>로 평가</p>	<p>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p> <p>①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 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u></p> <p>② 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u>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u>.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p> <p>⑥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u>로 평가</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p>	<p>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p>	<p>① 세액공제 <u>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의 12%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주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u></p>	<p>① 세액공제 <u>-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u> <u>-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u></p>

<p>(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p>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p> <p>[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p> <p>-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p> <p>- 연금계좌 세액공제</p> <table border="1" data-bbox="587 636 1018 1317"> <thead> <tr> <th>총급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th> <th>종합소득금액</th> <th>연금저축 공제한도</th> <th>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5,500만원 이하</td> <td>4,000만원 이하</td> <td>400만원</td> <td>16.5%</td> </tr> <tr> <td>5,5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td> <td>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td> <td>400만원</td> <td>13.2%</td> </tr> <tr> <td>1억2,000만원 초과</td> <td>1억원 초과</td> <td>300만원</td> <td>13.2%</td> </tr> </tbody> </table>	총급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연금저축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0만원	13.2%	1억2,0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300만원	13.2%	<p>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p> <p>[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p> <p>-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u>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u></p> <p>- 연금계좌 세액공제</p> <p>[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① <u>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u></p> <p>② <u>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u></p> <p>③ <u>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u></p> <p>[세액공제]</p> <p>-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p>
총급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연금저축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0만원	13.2%																
1억2,0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300만원	13.2%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가. 투자자 총회 등</p> <p>(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① 수익자총회의 소집</p> <p>-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u></p>	<p>① 수익자총회의 소집</p> <p>-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u></p>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자산운용보고서 (3)자산보관·관리 보고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이하 생략> 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이하 현행과 같음> 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간이투자설명서] : 운용역 변경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운용전문인력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 <u>홍호덕</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u>박정훈</u>	책임운용전문인력 : <u>박정훈</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u>강병희</u>

<끝>.